

의안 번호	1780	[울산광역시 중구 아동·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]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발 의 일 자 : 2021. 6. 11.(금)
- 발 의 자 : 안영호의원 외 10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25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12.(월)

### 2. 제안이유

-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,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·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,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방법 등(안 제5조~제7조)
- 비용지원, 지원신청(안 제8조~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 등 정보제공 및 홍보 등(안 제11~제12조)

### 4. 참고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
- 「민법」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의 부모 사망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 아동·청소년은 부모의 재산 및 채무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쉽지 않고, 법률 지식 및 절차를 몰라 곤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어,

이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·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,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## 6. 기타참고

### ○ 아동·청소년 연령 기준 관련 참고

#### 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
다만,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.

#### ■ 청소년 보호법

“청소년”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#### ■ 청소년 기본법

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○ 용어 참고

#### ■ 상속의 포기

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이다 (민법 제1041조 내지 제1044조).

민법은 유산의 채무초과를 고려하여 상속인의 상속승인·상속포기를 인정하고있다.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그 취지를 제출해야 한다(제1041조).

#### ■ 한정승인

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(遺贈)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(민법 1028조).

### ※ 조례 제정 현황(2021. 7월1일 기준)

- 울산시 (울산광역시 2020. 9. 24. 제정)
- 전국 총 29개 시·군·구 제정